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841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강득구 · 서삼석 · 이병진  
이학영 · 정일영 · 손 솔  
서영교 · 민병덕 · 박해철  
김재원 · 김주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3. “고등학교졸업자”란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등학교졸업취업자”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기업 등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지원,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

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고용유지,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현황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①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장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연구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3. 고등학교졸업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 운영
4. 고등학교졸업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졸업취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및 지부의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이하 “보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고용센터 및 시·도교육청에 보장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보조
2. 고등학교졸업취업자가 근무하는 기업 등의 부당한 노동환경감시 및 구제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진로 발굴 업무
4. 고등학교졸업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지원
5.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장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부를 둔다.  
각 지부에 파견된 직원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상담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안내
3.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취업 추적 관리
4. 기업에 대한 고등학교졸업자 홍보
5. 연수 및 교육
6. 기업 연계
7. 고등학교졸업취업자 부당 노동 환경 감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보장센터 및 지부의 직원 채용 및 배치 기준 등 보장센터 및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장원, 보장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① 보장원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 플랫폼(이하 “정보관리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고등학교졸업자(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고등학교졸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직 관련 교육비: 구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받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2. 구직 활동 촉진비: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자를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을 시행하는 경우
4. 고등학교졸업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제16조(고용안정공제회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회 사업
2.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 및 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장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보장센터는 고등학교졸업취업자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